#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94

발의연월일: 2020. 10. 21.

발 의 자:이탄희·강병원·강준현

강훈식 · 고민정 · 고용진

권인숙 · 김경만 · 김상희

김성환 · 김승원 · 김영배

김철민 · 남인순 · 박광온

박찬대 · 오영환 · 우원식

유기홍 • 유정주 • 유영덕

윤영찬 • 이소영 • 이수진비

이용빈 · 이용우 · 이해식

장경태 · 장혜영 · 정정순

정춘숙 • 주철현 • 진성준

최혜영 · 홍기원 · 홍정민

황유하・황 희 의위

(38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 중임.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2015년 12,495건에서 2019년 13,5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대 49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사건 접수이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최대 49일 이상의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0일 이상의 짧지 않은 기간이소요되고 있음. 평균 30일의 기간 동안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 같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재범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학교의장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 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 법률 제 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를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심리전문가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제3조(학교장의 분리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 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 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 -----학교폭력사건 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 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 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 피해학생이            |
|-----------------|------------------|
| 한다.             |                  |
|                 |                  |
|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